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7.
정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2. 12. 이정문의원 등 12인

나. 회부일자 : 2025. 2. 13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○ 제422회 국회(임시회)

－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(2025. 2. 19.)

－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5. 2. 20.)

상정 · 축조심사

○ 제427회 국회(임시회)

－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5. 7. 21.)

상정

○ 제429회 국회(정기회)

－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5. 11. 24.)

상정

○ 제430회 국회(임시회)

－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5. 12. 15.)

상정

○ 제433회 국회(임시회)

-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 3. 31.)

상정

-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 4. 2.)

상정 · 축조심사

○ 제435회 국회(임시회)

-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 5. 12.)

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- 제1차 전체회의(2026. 5. 14.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이정문의원)

가. 제안이유

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, 분할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,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반면,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.

특히,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개매

수를 강제하지 않는 현행 규제는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,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의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,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특정 주주가 주식 총수의 25%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, 해당 회사의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고, 공개매수 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설정(안 제133조제4항, 제141조제3항 신설).
- 2) 합병 등의 가액 산정 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가치 평가 의무를 부과하고, 합병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된 경우 기업 및 경영진의 연대 배상 책임을 명시하며,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주주가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(안 제165조의4 제2항부터 5항까지 신설).
- 3)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모집주식 총수의 35%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

의무화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항 추가(안 제165조의6제5항, 제165조의18제10호의2 신설).

3. 대체토론 요지

없음

4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강준현의원)

“위원회 대안”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.

5. 찬반토론 요지

없음

6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

7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8. 부대의견

없음